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등기번호	0934458	
등록번호	110111-0934458	
상 호	주식회사부천대장대한대토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본 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일간신문 머니투데이에 게재하되, 2개 이상의 신문에 공고하여야 할 경우,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기로 한다	
1주의 금액	금 100 원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주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변경연월일 등기연월일
발행주식의 총수	3,000,000 주	
보통주식	3,000,000 주	금 300,000,000 원

목 적

- (1) 회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에 따라 보상받기로 한 토지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회사는 토지보상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시행자(이하 '토지공급사업시행자'라 한다)와 보상받기로 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할 수 있다.

1. 부동산

1. 부동산개발사업

1.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1.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 수익권

1. 증권,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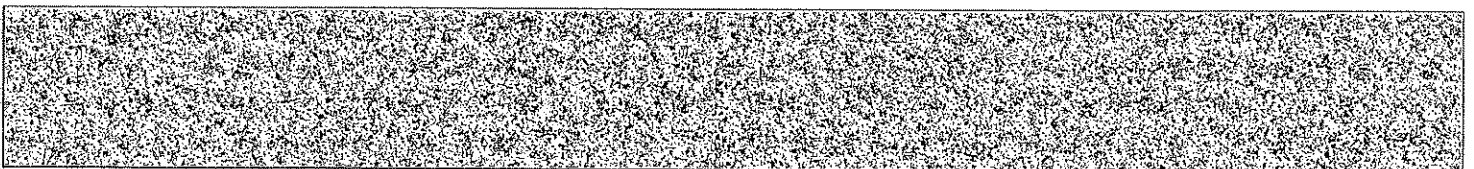
1. 현금(금융기관의 예금을 포함한다)

- (3) 회사는 영업인가를 받은 후 제2항 각 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그 자산을 투자, 운용한다. 회사는 그 자산의 투자, 운용과 직접 관련된 업무 기타 부투법 또는 다른 관련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1. 취득, 개발, 개량 및 처분

1. 관리(시설운영을 포함한다), 임대차 및 전대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35041111270109011810051200825140483T9M101310011110 5

발급확인번호 4451-ALOD-OTLC

발행일 2025/08/19

등기번호	0934458
------	---------

1. 부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 부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 등 부투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대출, 예치
1. 위 각 호에 부수하는 업무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권용하 920911-	
대표이사 권용하 920911-	서울특별시
기타비상무이사 박수재 580801-	
기타비상무이사 이근형 640219-	
감사 이시웅 830619-	

기 타 사 항	
1.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2.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3. 합병	
4. 파산	
5.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6.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례등록 또는 영업인가의 취소	
7. 부투법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례등록 또는 영업인가가 거부된 경우	
8. 설립 후 1년 6개월 이내에 부투법에 따른 특례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회사성립연월일	2025 년 08 월 13 일
---------	------------------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설립	2025 년 08 월 13 일 등기
-------------------------	---------------------

— 이 하 여 백 —

관할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 발행등기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수수료 1,000원 영수함

이 증명서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다만, 신청이 없는 지점·지배인에 관한 사항과 현재 효력이 없는 등기사항의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서기 2025년 08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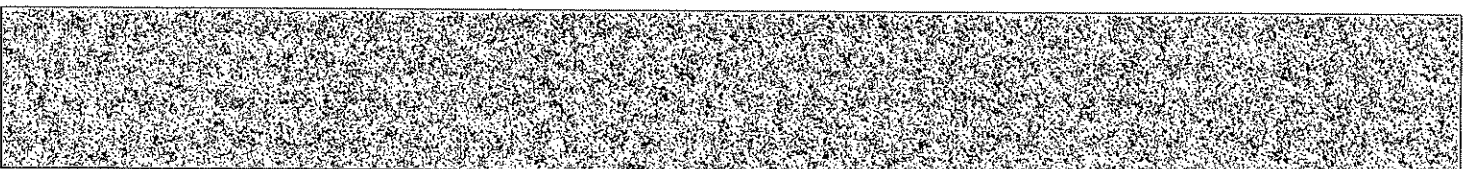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 책임관



* 실선으로 그어진 부분은 말소사항을 표시함.

문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캐너로 확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s://www.iros.go.kr>)의 발급확인 메뉴에서 발급확인번호를 입력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행일부터 3개월까지 5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발행번호 135041111270109011810051200825140483T9M101310011110 5

발급확인번호 4451-ALOD-OTLC

발행일 2025/08/19